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9.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9. 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9. 10.
다. 상정일자 :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9. 9.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가. 제안이유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목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위탁내용

- 위탁시설 현황

구 분	위 탁 대 상 시 설		
시 설 명	(가칭) 신촌숲아이파크어린이집	GS예원어린이집	월드컵어린이집
소 재 지	마포구 신수동 93-102, 신촌숲아이파크 관리동	마포구 창전로 26, 서강GS아파트 관리동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상암월드컵파크9단지 관리동
규 모 (m ²)	625.1	116.89	206.85
확 총 유 형	신규 - 공동주택 관리동 - 10년 무상임대	전환 - 공동주택 관리동 - 10년 무상임대	전환 - 공동주택 관리동 - 10년 무상임대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범위 :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3. 검토보고 (최종의 전문위원)

가. 제안 경위

- 본 동의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9.9.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4호로 2019.9.10.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18)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19)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3개소의 운영사무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18)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전에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5.9.24>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²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기준 마포구 전체 어린이집 207개소 중 구립 어린이집 <표 1> 은 68개소로 전체의 3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구립 어린이집 연도별 현황

(2019.3월 기준)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비고
구립어린이집 수 (증가 수)	46 (0)	49 (3)	62 (13)	68 (6)	4년간 22개소 증가

나.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본 건은 ‘(가칭)신촌숲아이파크어린이집’외 2개소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으로써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됨.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²¹⁾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제1항²²⁾에 따라 구청장은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1)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

22) **제20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통상적인 구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도 부합하다 판단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